#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54 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오세희·김태선·어기구

민병덕 • 이기헌 • 정진욱

김우영 • 민형배 • 문금주

정태호 · 이상식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기자동차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충전시설의 보급 또한 확대되고 있음.

그런데, 최근 발생하고 있는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화재의 경우 열폭주로 인해 화재진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나 시스템 구축은 미비한 상황임.

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, 화재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고,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(안 제10조

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1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(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에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, 소화용수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(이하 이 조에서 "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- ②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·파악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③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- ④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,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3항에 따른 확인 방법·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소방청장은 제18조제1항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여야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기자동차충전시설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0조의2(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
	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
	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	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
	관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
	하여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
	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
	사업자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
	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
	법률」 제11조의2제1항의 환경
	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(전기
	자동차 충전시설에 한정한다.
	이하 같다)에 스프링클러설비,
	물분무등소화설비, 소화용수설
	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
	방시설(이하 이 조에서 "전기
	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"
	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	②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
	소방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
	설용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
	을 실시간으로 수집·파악할

- <u>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</u> <u>할 수 있다.</u>
- ③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 설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 인하여야 한다.
- ④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,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3항에 따른 확인방법·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수 있다.
- ⑥ 소방청장은 제18조제1항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전기자동차 충전시 설용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을 마련하여야 한다.